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6
----------	------

2016년 9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7일, 김광수(노원)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광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 필요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원화하고, 기금 안에서 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위배의 소지 배제(안 제1조, 제1조의3)

- 위원회 구성원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 제15조)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추가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용(안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원화하고 위원회 구성 등 미비점을 보완하며,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용어 정리(안 제1조, 제1조의3)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 설치 없이 기존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함)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함)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12.7.30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u>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u>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u>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u> 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1조 목적에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없이 바로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기술하는 것은 조례의 형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달라 위배될 소지가 있어 최근 법제처에서도 정비를 요구('16.5.16)한 바 있음.

〈본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제1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설치된 기금 안에서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할 것임.

2)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6조, 제15조)

-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와 환경개선계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고, 위원 중에 총괄기금관리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 중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위원장인 국장(환경에너지지획관) 보다 높은 직급으로 운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과장급인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현재 서울시 기금총괄담당부서장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음).

3) 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연장(안 제13조)

- 기금 내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원하여 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2013년부터 환경개선계정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편입부지 보상금과 지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 또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4자협의체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면적 : 3-1공구(103만㎡) ◦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시 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 완료예정인 1,2매립장 및 기타부지 우선 양도 ◦ 잔여부지(3,4매립장)는 매립종료 후 일괄 양도 ◦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
대체매립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조성 방안 마련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주민갈등 해소 등 선결조건 이행시 이관 동의

〈환경개선계정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15년	'16년	'17년	'18년~
경인아라뱃길	1,025	340	200	200	285
제2외곽순환도로	409	-	-	373	36
청라지역 등	236	-	-	-	236

- 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5년 연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6조제1항제3호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설〉</p> <p>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총괄기금관리관</u> 4. (생략) 	<p>제1장 총칙</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u> 2. <u>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u> <p>제6조(협의회 구성)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기금총괄담당부서장</u>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u>2016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p> <p>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u>총괄기금관리관</u></p> <p>2. ~ 4. (생략)</p>	<p>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u>2021년 12월 31일까지</u> ----- ----- ----- -----.</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u>기금총괄담당부서장</u></p> <p>2. ~ 4. (현행과 같음)</p>